

---

 ◆ 政府施策 ◆
 

---

## 無登録 공장 移轉 추진

### — 通産部, 11월까지 종합대책 확정방침 —

정부는 조건부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을 가급적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건부등록공장의 이전기한이 내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 가급적 이전할 여건을 마련해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통산부의 산업기반기금 내에 관련예산 800억원을 배정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양성화를 시키되 이마저 불가능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들을 폐업조치하면 도산 및 대량실업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인력확보와 판로개척 등에 애로가 있고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자력이전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지역은 산업 및 인구집중 완화를 위해 공장 설립을 억제하고 있어 양성화에도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지 실태조사와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전국의 조건부 등록공장은 1만456개, 무등록공장은 4만3883개에 달하며 이중 조건부 등록공장 8192개, 무등록공장 3만107개가 수도권지역에 편재해 있다.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 — 통산부, IEC 전문위원회 등 신규가입 추진 —

통상산업부는 기업체의 수출전략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 및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규

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IEC의 국제규격 제·개정 초기단계에 참여하고자 현재 199개중 130개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 및 분과위원회에 멀티미디어 등 7개 분야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향후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 51개국의 회원으로 구성된 IEC의 199개의 전문 및 분과위원회중 우리나라는 130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까지 기술여건 및 국제규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저조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저조한 국제표준화활동은 우리 기업체의 수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 및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의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의 기술이 국제수준에 근접되었다고 판단되는 멀티미디어 등 7개 분야의 전문 및 분과위원회에 신규가입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전자 기술분야에 있어서 표준화에 관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08년 10월에 설치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우리나라는 1963년 6월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국제표준화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 세계 51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IEC에 전기, 전자, 정보에 관련된 국제규격의 제·제정을 위한 89개의 전문위원회(TC)와 110개의 분과위원회(SC)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중 47개의 전문위원회와 83개의 분과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199개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하여 아직까지 우리는 기술여건 및 국제규격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저조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렇게 저조한 국제표준화 활동은 우리 기업체의 수출전략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 및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기업체의 국제규격 동향 및 흐름에 신속한 대응부족이 수출시 규격 미달로 클레임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체의 이미지 손상 우려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구체적인 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내수용, 수출용을 구분할 생산라인이 필요 없는 즉 하나의 생산설비로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KS와 국제규격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내수용품과 수출용품을 따로 만들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자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KS의 국제규격 부합화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규격의 제·개정 초기단계에 참여하여 우리의 규격이 국제규격에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제품이 곧 국제통용품 즉 수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현재는 IEC의 130개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의 기술이 국제적 수준에 근접되었다고 판단되는 멀티미디어분야 등 7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향후 동 분야의 국내기술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이번에 우리가 9월 중으로 IEC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신규가입 하는 7개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음향, 영상 및 멀티미디어시스템과 기기
- 전력시스템 제어 및 관련 통신
- 화재위험 시험분야
- 저압용 퓨즈
- 소형 퓨즈
- 광섬유 및 케이블
- 멀티미디어 Sub System 분야

##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시행 - 제품에 우수제품 마크 부착 가능 -

중소기업청은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인증마크 신청서를 '96. 9. 12일부터 받고 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를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모든 제품이 되며 다만 물과 관련된 제품, 의약 관련 제품, 농산물 및 총포, 화약류 등은 제외된다.

우수제품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그 품목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및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중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신청품목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와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에 관한 명세, 그리고 신청품목의 전년도 매출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때 신청업체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장심사 신청을 받은 시험연구원은 심사착안사항을 신청업체에 송부하여 업체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공장심사 관계자가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게 되며 합격은 100점 만점중 60점이상으로 하고, 공장심사가 합격된 후에 사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 이를 검사하게 된다.

제품검사는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기술기준, 사전·사후검사기준 등을 적용하고 합격되면 공장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중기청장에게 중기 우수마크 부여 신청을 하고 중기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공장 심사기준은 환경, 디자인, 안전, 교육, 설비관리, 공정관리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S, 품, Q, 검, 전 등의 인허가시 심사기준이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마크 심사기준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 제조환경 변화시 각 업체가 적용할 수 있는 제조체질 강화를 목표로 총체적 품질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은 각 세부항목별 5점씩배분(20 항목×5점)하여 100점 만점을 하고, 각 항목은 다시 5개 소항목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다시 점수배분하여, ▲ 1.5점 해당은 1문항별 0.3점씩 배분(0.3점×5문항=1.5점)하고, ▲ 1.0점 해당은 1문항별 0.2점씩 배분(0.2점×5문항=1.0점)하고, ▲ 0.5점 해당은 1문항별 0.1점씩 배분(0.1점×5문항=0.5점)하였다.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우수제품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에 중소기업청이 정한 우수제품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제품뿐만 아니라 그 포장, 송장등 에도 표시하고 이를 광고나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제품인증을 받은 업체는 사무실 또는 공장 정문 등에 소정의 우수제품 인증업체 표시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생산공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동 공장이 지속적으로 우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며, 시험연구원과 협약에 따라서 공장도가격의 0.5% 이내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1년에 한번씩 인증받은 수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공장 검사를 받게 된다.

사후관리결과 중결합의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마크포시를 정지하고 경결합의 경우 보완지시를 하는 한편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제품구입시 착오가 없도록 조치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획득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인증제품의 합동전시회의 개최와 제품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하는 등 종합적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등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확대될 것이며 전실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높여 수출활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현황 발표

### - 중기청, 신규 1,443업체 추천 -

중소기업청은 '96. 7. 1일부터 8.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업종별 협동조합, 국가공단 관리협회 등을 통하여 접수한 정보통신기계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합판제조업, 식품, 의약제조업 등을 제외한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의 '9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9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요 인력중 잉여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여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6,999개 업체에서 70,0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병역특례업체의 지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인 기업체가 신청대상이며 추천 기준별 15개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순위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대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채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충역 대상자의 근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28개월로 단축하고 무자격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술 자격 요건을 폐지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번 지정업체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업종별 관할 구분없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시·도지회 13개소, 업종별 협동조합 54개소, 한국수출산업공단을 비롯한 국가공단 12개소 등 총 79개소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총 2,263개 중소제조업체의 '97 신규병역특례지정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접수받은 총 2,263개 신청업체중 신청기준 미달업체 351개 업체를 제외한 1,912개 업체를 중소기업청 추천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순위별로 추천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및 요업, 생활용품 등 9개 업종별로 25%씩 4등급으로 평가한 후 3등급(C등급) 이상 업체 1,443업체를 '97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9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7,551업체로 부터 72,548명 신청받았다고 밝히고 소요인원 신청업체중 대기업 291업체, 공장등록증 미제출 업체 71업체, 신규 병역지정업체 추천제외업체 820업체를 제외한 6,369업체의 요구인원 59,948명에 대하여 '9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산정하기로 하고 '9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산정기준은 업체 규모별 소요인원을 산정 배분함으로써 공정한 인원배분을 유도하고 기존업체와 신규 업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업체별(법인 전체) 총 종업원수에 의거 소요인원을 산정하여 다수의 공장을 보유한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이 과다 배정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한편 '95~'96년 산업기능요원 채용률이 높은 업체 및 인력난이 가중한 소기업을 우대하여 기존 병역지정 업체 4,926업체에 27,560명, 신규 추천업체 1,443업체에 7,215명 총 34,775명을 '97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하여 줄 것을 병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밝혔다.

■ 병역지정업체 추천 내역(전기업종) (단위:개)

신청대상 업체수	등급별 업체수				추천대상(A, B, C)
	A	B	C	D	
159	42	39	39	39	120

■ '97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산정결과 (단위:개, 명)

기 존			신 규			합 계		
업체수	요구인원	추천인원	업체수	요구인원	추천인원	업체수	요구인원	추천인원
393	4,018	2,215	120	1,016	560	513	5,034	2,775